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53 호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38호(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안)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43호(개발행위(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공고) 10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39호(주택임대사업자행정처분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40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구월4동1303-7번지일원의
7개소)설시계획인가고시) 1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 63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453-3986~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의거 설치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온 바, 이를 전면 폐지하고 동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규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내지 제4조)
- 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등(안 제5조 내지 제6조)
-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조사·연구의 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9조 내지 제10조)

☐ 본문 : “별첨”

☐ 참고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동구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남동구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안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관할구역 소방서의 장
4. 관할구역 경찰서의 장
5.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6. 관할구역 교육장
7.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관련 담당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세부규정)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타 운영 사항에 필요한 세칙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643 호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기간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립과 관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건축) 허가를 제한(기간연장)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9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한지역

가. 제한위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

나. 제한면적 : 372,320m² (112,627 평)

2. 제한사유

- 소래지역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구역) 결정시기 까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3. 제한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4. 제외대상

-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가설건축물
- 구청장이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확실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

5. 제한기간

○ 당 초 : 2002. 9. 19 ~ 2005. 9. 18(3년)

○ 변 경 : 2002. 9. 19 ~ 2007. 9. 18(5년)

6. 문의사항

-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90), 건축과(☎ 453-2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5 - 39 호

주택임대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중 지방세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시합니다.

2005. 9. 2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행정처분 내역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임대사업자 - 196	강미선	인천 남동 간석3동 35-1 두원파크 103/401 경기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269-36 조양빌라 18/201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임대사업자 - 197	전성옥	인천 남동 구월3동 1109-2 옥빌라 302호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임대사업자 - 175	신호신	인천 남동 만수1동 927-11 그린다세대 가/지2호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2. 고지사항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5 - 40 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구월4동 1303-7번지 일원 외 7개소)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교통과(☎032-453-28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5. 9. 2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구분	사업의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 류	명 칭
1	구월4동1303-7번지 일원	교통시설(주차장)	구월동 1303-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	만수2동868-17번지 일원	교통시설(주차장)	만수동 868-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	간석1동459-9번지	교통시설(주차장)	간석동 459-9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4	구월3동1382-19번지 일원	교통시설(주차장)	구월동 1382-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5	만수5동896-15번지 일원	교통시설(주차장)	만수동 896-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6	만수6동 1099-3번지	교통시설(주차장)	만수동 1099-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7	구월2동 69-3번지	교통시설(주차장)	구월동 69-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8	만수3동 839-20번지 일원	교통시설(주차장)	만수동 839-2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계	8개소		

2. 사업의 규모

구분	사업의시행지	필지수	면적(m ²)	비 고 (용도지역 등)
1	구월4동 1303-7번지 일원	10	1,632.1	제2종일반주거지역
2	만수2동 868-17번지 일원	9	1,236.5	준주거지역
3	간석1동 459-9번지	1	164.1	제2종일반주거지역
4	구월3동 1382-19번지 일원	2	358.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5	만수5동 896-15번지 일원	2	324.6	제2종일반주거지역
6	만수6동 1099-3번지	1	44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7	구월2동 69-3번지	1	394.4	제2종일반주거지역
8	만수3동 839-20번지 일원	2	294.6	준주거지역
계	8개소	28	4,84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4.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 10. ~ 2006. 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6.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토 지 조 서

공사명: 구월동 1303-7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잔여	도	장	대	성명	구분	성명	주 소	
1	구 월	1303-7	대	145.6	145.6				●	이정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7번지			
		1303-8	대	155.5	155.5				●	유충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171번지			
		1303-9	대	169.7	169.7				●	박인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9번지			
		1303-10	도	171.3	171.3		●			인천시				
		1303-12	대	139.8	139.8				●	김영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12번지	근저당	농업 활동 조항종양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부평지점)
		1303-13	대	162.5	162.5				●	임경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13번지	근저당	인천수산업 협동 조합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구월동지점)
		1303-14	대	168.5	168.5				●	김영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14번지	근저당	농업 활동 조항종양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구월지점)
		1303-15	대	170.8	170.8				●	리백균	인천 남구 용연동상 익아파트 2동407호			
		1303-16	대	168.0	168.0				●	유만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166번지			
		1303-17	대	180.4	180.4				●	이동훈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17번지			
	소 계			1632.1	1632.1									

토 지 조 서

공사명: 만수동 868-17번지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도	장	대	성명	주 소	구분	성명	주 소	
2	만 수	868-17	대	131.7	131.7				●	탁동성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8-17	근저당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만수동지점)		
		868-18	대	131.1	131.1				●	고성준	인천 남동구 만수동 81-19					
		868-19	대	144.8	144.8				●	신상숙 김정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8-19	근저당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오양지점)		
		868-20	대	141.2	141.2				●	임승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8-20	근저당	이 영 애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8-20		
		868-21	대	133.4	133.4				●	임선직	인천 남동구 만수동 81-45					
		868-22	대	134.0	134.0				●	안성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1-46					
		868-23	대	144.2	144.2				●	안인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대광아파트 지동302					
		868-24	대	144.1	144.1				●	양희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8-24	근저당	만수 새마을금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 5-463		
		868-25	대	132.0	132.0				●	민수 중앙교회	인천 남동구 만수동 72-27					
						공				란						
	소 계			1236.5	1236.5											

토 지 조 서

공사명: 간석동 459-9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공유지분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구분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잔여		도	장	대	성명	주소			
3	간석	459-9	대	164.1	164.1					●	김은순	경기도 평택군 생성읍 안정리 조원빌라 기동 비02호	근저당	한 국 상업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충계7가지점)
													근저당	한 국 상업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이포지점)
						이		하		여		백			
	소계			164.1	164.1										

토 지 조 서

공사명: 만수동 896-15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도	장	대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 소	
5	만 수	896-15	대	153.6	153.6				●	황학주	인천 중구 경동68-1				
		896-16	대	171.0	171.0				●	황학주	인천 중구 경동68-1				
						이	하		여		백				
	소 계			324.6	324.6										

토 지 조 서

공사명: 만수동 1099-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전여	잔여		도	장	대	성명	주소	성명	구분	성명	주소	
6	만 수	1099-3	대	441.5	441.5	441.5						●	김영자	인천 남구 관교동 동아아파트 1동905호		근저당	남 동 농림청통조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석암지점)	
							이			하		여		백					
	소 계			441.5	441.5	441.5													

토 지 조 서

공사명: 구월동69-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공유지분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잔여	공유지분	도	장	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구월	69-3	대	394.4	394.4					●	국	(재무부)							
						이		하		여		백							
	소계			394.4	394.4														

토 지 조 서

공사명: 만수동 839-20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도	장	대	성명	주 소	구분	성명	주 소		
8	만 수	839-20	대	134.2	134.2					●	인천시						
		839-21	대	160.4	160.4					●	인천시						
						이		하	여			백					